

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연도별 노인학대 전체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
 학대사례의 경우 최근 5년간 **31.3% 증가**(‘13년 3,520건 → ’17년 4,622건)하였습니다.
 이 중에서도 가정내 학대가 상당수이며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역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
 가정내 학대 추이: (‘13년) 2,925건(83.1%) → (‘17년) 4,129건(89.3%)
 생활시설 학대 추이: (‘13년) 251건(7.1%) → (‘17년) 327건(7.1%) (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서)

노인학대,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



“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”

- 농어촌 노인학대 사각지대 심각... 1인당 담당노인 2만 8천명 <메디컬월드뉴스 2019.4.20.>
- 사기 치고 몰래 돈 빼 쓰고... 노인 노린 ‘경제적 학대’ 막아라 <중앙일보 2019.5.12.>
- 고령 요양원서 노인학대·폭행 의혹... 경찰 수사 착수 <뉴스1 2019.4.9.>
- 자식이 아니라 ‘웬수’.... 노인학대, 4명 중 1명이 아들 <조선일보 2019.5.6.>
- 노인학대 행위자 아들 > 배우자 > 기관 순 <한겨레 2018.6.14.>

노인학대,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

노인학대란?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. <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>

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?

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 시·도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

여러분의 관심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노인학대 신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
 24시간 상담 **1577-1389** 또는 **110**



노인보호전문기관

www.noinboho.or.kr



보건복지부



노인보호전문기관

“**어르신**이 **행복**하면 **모든세대**가 **행복**합니다.”

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

- **입소대상** :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- **입소기간** : 4개월(부득이한 경우 2개월 이내 기간 연장 가능)
- **서비스내용**
 - 법률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,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지원
 - 학대재발 방지 및 원가정 회복지원을 위한 가족상담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
 -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
 - 학대피해노인 긴급보호 및 의식주 등 쉼터 생활 지원
 -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지원
 - 학대로 인한 심신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

※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퇴소(최대 6개월) 후
원가정 복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은 양로시설(52개소)로 연계하여 입소 지원



노인학대 유형과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징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.

신체적 학대

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
- 위축감,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
- 묵인 흔적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 및 부상이 보임
- 영양부족 및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또는 갑작스러운 체중감소



정서적 학대

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
- 무반응 또는 무표정 및 우는 모습
- 흥분,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부림
-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불안한 모습으로 눈치를 봄



성적 학대

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

-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
-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
- 성병에 걸렸거나 속옷이 찢어짐



경제적 학대

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

-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
-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
-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



방임

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)

- 대소변 냄새, 땀띠, 염증, 욕창 등이 방치됨
-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주거 환경
-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함 (자기방임)



유기
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-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
- 노인을 시설,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



Q1 노인학대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,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(1577-1389) 또는 정부민원안전콜센터(110)에 신고하시면 됩니다.

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(24시간 상담) **1577-1389** 1년 3 65일 **빨리** 구해주세요!

국번없이 **1577-1389**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**자동 연결**됩니다.
신고자의 **비밀보장**: 신고인의 **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**합니다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).

Q2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


Q3 노인학대, 처벌규정이 있나요?

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 노인복지법,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형법 적용 가능

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➔ **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,000만원 이하 벌금**

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/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·성희롱 등의 행위
노인유기 및 의식주를 포함 기본적 보호,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
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

폭언, 협박,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➔ **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 벌금**

노인을 위하여 증여,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➔ **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**

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 ➔ **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**

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➔ **500만원 이하 과태료**

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한 폭행·협박, 업무를 방해한자 ➔ **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 벌금**